

			
보고일시		2008.7.24(목) 조건	
배포일시	2008.7.23(수)	담당부서	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
담당과장	이재영 (2150-4750)	담당자	정여진 사무관 (2150-4753)

제목 : 「외국환 거래규정」 개정

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「외국환 거래규정」을 개정

【 주요 개정내용 】

가. 증권사·자산운용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

- (현행) 증권사의 경우 신용파생거래,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환파생거래가 제한적으로 인정
 - 당국이 거래규모, 횟수,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였으며,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
 - *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건별신고, 횟수와 금액이 큰 경우
- (개선)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
 - 다만, 급격한 외환유출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당국에 사전신고를 의무화
 - 증권회사 신용파생 거래 : 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
 - 자산운용사 외환파생 거래 :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인 경우
- (기대효과)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업무역량 제고 기대

나.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

- (현행)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와 재정부 모두 방문 필요
 - 금융위 사전확인과 재정부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관리·감독도 양부처에서 모두 수행
- (개선)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·감독주체를 일원화
- (기대효과)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절차 편의성 제고 기대

- 증권사·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7.25일(금)부터 즉시 시행
 -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경우는 금융위 감독규정 후속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, 9.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
- 재정부는 금번에 개편되는 제도의 정착추이를 살피가며 내년도 규정개정시 업무자율성을 더욱 확대하여 국내 자본시장 육성 및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지원하겠음

기획재정부 대변인